

第19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6.8.24.~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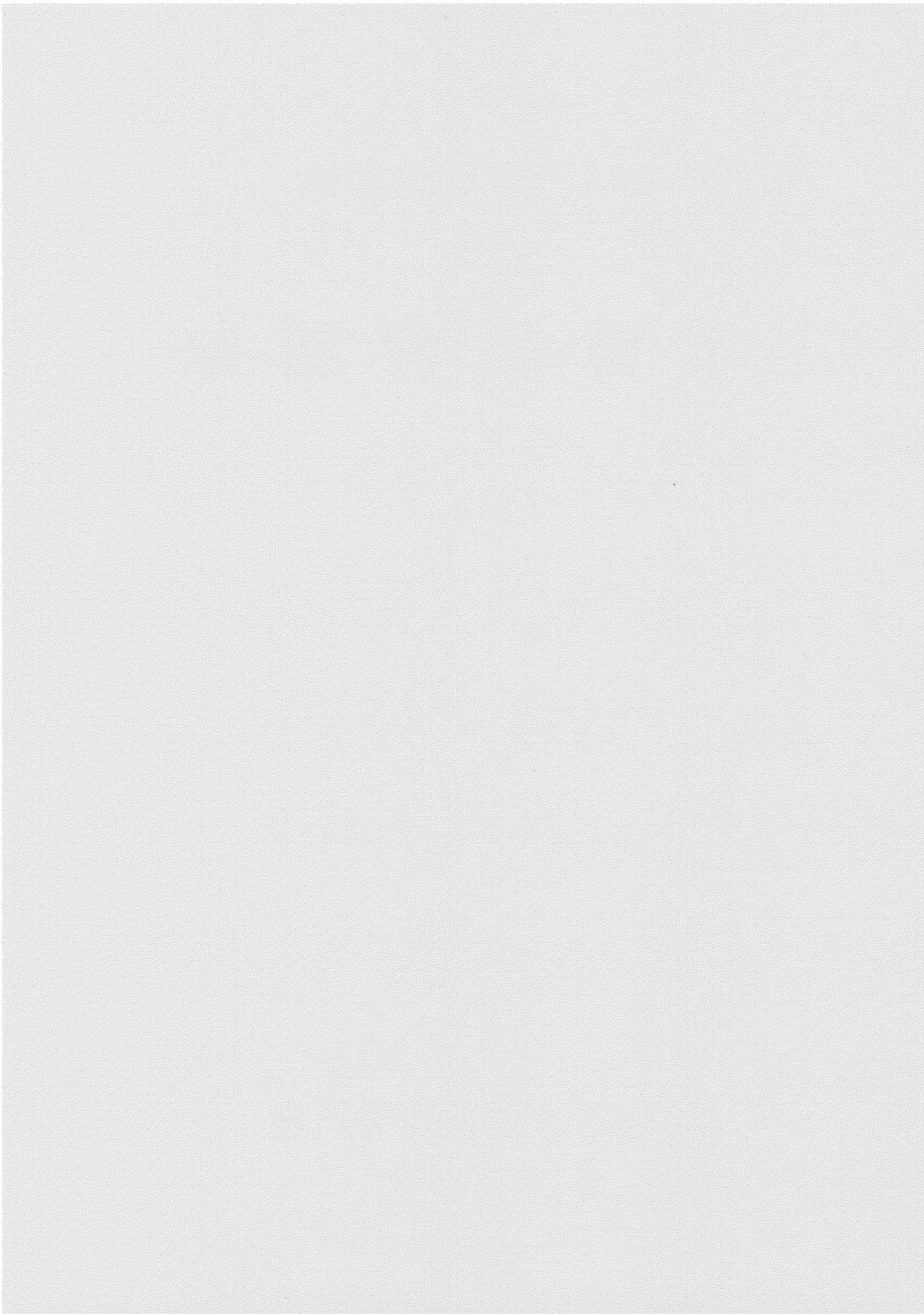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9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311
II.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313
III.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32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337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39
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51
4.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	357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73
6. 청원요지서 .....	395
7. 조례심사보고서 .....	40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11시 31분

## 開會式順(第19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31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33분 폐식)

지금부터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11시 33분

## 議事日程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7.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
8.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8.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문백초등학교 이월희 교장·오상례 학부모회장·곽창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고규강 위원의 소개로 제출)
9.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33분 개의)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안접수 상황, 도의회 안건 처리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8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이 고규강 교육위원

의 소개로 접수되어 8월 16일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에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21일 제25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9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3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 및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처리하시겠습니다.

8월 25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8월 26일과 27일은 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8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인용 조항이 “제24조 제3항”에서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어의 정의 중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교육재정계획심

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관한 인용 조항이 “제16조의2”에서 “제33조”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위원장의 직무 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5조 제3항의 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주요 심의사항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며,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체결 시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자적 법령체제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정의 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

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하며, 영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 책임 한계를 명확히하고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보고체계를 재정립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5)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44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8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

(11시 4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문백초등학교장, 문백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문백초등학교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학교의 급식과 관련하여 진천교육청과 도교육청의 행정이 합당하지 않다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서 및 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청원요지서(별첨 6)

(끝에 실음)

본 청원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에서 협의한 대로 교육현장의 교육가족 간의 신뢰의 문제, 학교장의 학교경영 및 리더십의 문제, 관련 교사의 교사로서의 자질 문제, 행정 당국의 명쾌한 행정처분의 문제 등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으나 청원의 복잡성에 비추어 이번 임시회에서 청원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는 일정이 부족하고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원의 요구사항이 해결된 부분도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학교급식관련청원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청원의 건의 의결사항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이 본회의에 채택되지 않았으나 청원인의 요구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의장 본인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9.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48분)

###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사일정 제7항 학교급식관련 청원의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함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웅,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 4)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5)
- ▶ 청원요지서(별첨 6)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8월 28일 (월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o 5분자유발언(진옥경 위원)
- o 5분자유발언(송대헌 위원)

(11시 00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  
· 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  
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

(11시 02분)

●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남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남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8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인 제24조 제3항이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안 제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표현된 조문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인용 조항인 “제16조의 2”가 “제33조”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3항 중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심사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관련 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중 주요 심의 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체결 시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돼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의 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하며, 영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 운영관 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보고체계를 재정립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교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관련 청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초등학교 급식사건과 관련한 청원서를 검토·분석하고 진천 교육장, 부교육감, 교육감의 추진실태를 제출 받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등 관련 공무원들이 학교장

의 직무지시에 불응하여 학교 내 위계질서는 물론,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러 처분권자인 진천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누차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교육감을 찾아가 급식소의 일련의 사태와 진천교육청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권자인 진천 교육장과 교육감의 직무태만으로 급식거부 사태까지 발생하게 한 중대하고도 명확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식사태 발생 이후 부교육감,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면직을 요청, 학교장과 부군인 신대휴 선생이 명퇴신청과 학교장이 자살까지 기도하려는 사실을 안 운영위원장과 학부모대표, 총동문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여 운영위원장과 총동문회 회장이 교육감에게 학교장 면직의 부당성과 초빙교장 임기 동안 제자리에 있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교육감은 직에 목을 걸고 면직시키겠다고 하여 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아 2006년 8월 9일 접수시켰으며 접수시킨 다음 날인 8월 10일 교육감은 문백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교장,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총동문회 회장에게 면직시키지 않겠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는 이월희 학교장의 면직 처리를

하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급식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초등과장, 진천 교육장 등 수명이 청원서를 철회하라고 강요하였는가 하면 청원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것이니 철회하라, 심지어는 휴대폰에 문자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한 점으로 볼 때 지도 감독권자인 학교장이 처분권자인 교육감에게 학교 내의 급식사건 문제와 진천교육청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누차 보고하여 학교장은 감독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도 감독책임을 물은 점과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에 의거 처분권자인 교육감과 진천 교육장이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아야 됨을 두려워한 나머지 취한 일련의 행동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해야 할 교육위원회마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청원소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그 억울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청원인은 물론 15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독하거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미리 제출한 발언요지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신청 접수 순서에 의거 진옥경 위원님, 송대헌 위원님의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옥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고규강 위원으로서의 발표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고규강

그런 정정 못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성영용 위원 의석에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발표해 주세요.

#### ● 진옥경 위원

제4대 교육위원회를 마치며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오늘 제4대 교육위원회 폐회에 앞서 저는 지난 제193회 도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회기 중인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2시경부터 8시경까지 의장의 협조 하에 관계자 10여인의 진술을 청문하고 28일 오전까지 개

인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 자리를 빌려 동료들께 보고드리고, 우리 교육의 당면 과제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1일자로 제출된 청원서는 진천 문백초등학교 이월희 교장과 같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자모회장의 연서명으로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에도 도교육위원회 의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고규강 의장을 청원 소개 위원으로 하여 청원하였습니다.

총 100여 장에 달하는 청원서는 지난 5월 15일 진천 문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영양사 강제 잔반 급식사건 전까지 2년여 간 지속된 교내갈등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직무태만에 의해 날로 증폭된 것임을 고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교육청에 청원인을 고발하는 형식의 해당 학교 조리사의 진정서 17장도 포함되어 있어 첨예한 갈등의 모습을 여실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것에서부터 같은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이 다른 것에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청문을 위해 사전의 설문을 준비하여 이에 대한 당사자 진술을 듣고 주요 사항을 기록했으며 동의를 받

고 대질 형식으로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밖에 청문 전후에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은 대체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월희 교장이 초빙교장으로 문백초등학교에 부임하기 직전인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지속된 보건교사의 문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이어진 조리사의 문제, 그리고 2006년 3월부터 5월 급식사건 발생 때까지 이어진 영양사의 문제, 그리고 이 2년 동안 진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보여준 문제 등입니다.

청원인인 교장선생님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수 차례 건의한 정수기 설치를 6개월간 차일피일 미루며 교장에게 대들고 학교구성원들을 미워한 보건교사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어 부임 후 한달 동안 조리를 하지 않고 학교 급식 재료검수를 위해 학교에 오는 학부모들을 못마땅해 하며 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일 등을 시킨 조리사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급식지도를 한 영양사의 처사가 시기적으로 중첩되면서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보건교사는 청문 진술에서 정수기 설치를 둘러싸고 교장과 큰 갈등

이 일어난 일이 없었고 지시에 불복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수기 설치를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리사는 부임 후 제대로 조리를 하지 않은 것은 학교에 없는 영양사 역할도 대신하여 행정업무로 바빴고 조직적인 일처리를 못하는 조리종사원들을 지도하느라 그런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편 영양사는 잔반을 조금씩만 떠 먹여 편식습관을 지도하려 했고 아이들을 때린 일이나 파리채로 때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립되는 진술 속에 보건교사와 조리사, 그리고 영양사의 변명도 일면의 진실을 가지고 있으며 청원인 측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짐작되지만 청문 및 조사 후 최종적으로 저는 청원인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의 이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저는 청원인이 교내 갈등의 원인과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보건교사의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고 청문에도 1시간 반 정도를 할애하여 당사자 진술을 들은 후 청원인들과의 대질을 벌였고, 이튿날 26일 오전 믿을만한 참고인과 통화도 나누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상반기에 진천교육청을 통해 받은 서면답변서에는 당시 문백초에 1대의 정수기가 보유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정수기 관리 및 위생 강화를 위해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 관리담당 보건교사, 지정된 담당자에게 구체적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수기 옆에는 컵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매일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보다 1년 전인 2003년도 청주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붙임자료의 정수기 관리요령 중에도 “학교장은 정수기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학생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적절한 자리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보건교사에게 맡긴 이(李) 교장의 행위는 온당한 것임에도 이에 불복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를 학생들이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룬 보건교사의 처사는 직무태만 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조리사 문제는 교육감 교육장 과장님 앞으로 보낸 형식의 진정서가 이들에게는 직접 전달되지 않고 이(李) 교

장과 교육청 보건급식담당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교장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영양사 자질 문제는 학생들의 일치된 주장 및 해당 영양사의 행위가 부적절했었다는 영양사협회의 사후 성명서, 영양사가 파리채로 아이들을 때렸고 아동이 먹지 않고 섞어 놓은 음식을 억지로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진천교육청의 사안 감사 처분서 내용 등이 청원인 측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진천교육청과 충북 도교육청은 교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명확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보건교사, 조리사, 영양사에 대해 뒤늦게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조리사 진정서 건에 국한해 보더라도 진정서 안의 시시콜콜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교육감 교육장 국장 앞으로 보내는 형식의 진정서를 당사자들에게는 보내지 않고 교장 본인에게 보내는 하극상의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 영양사 잔반 강제 급식사건 관련 감사를 마치고 가장 미약한 행정처분과 함께 2006년 7월 1일자로 전보 조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인들로서는 당시 이 학교의

순회 영양사격인 진천교육청의 강송미 보건급식담당 내지는 또 다른 인사가 학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초빙교장을 못살게 군다고 유추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학교 영양사의 잔반 강제 급식사건이 일어난 5월 이전에 청원인과 그 부군,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과 부회장, 동문회장이 모두 일곱 번이나 전제원 진천 교육장을 찾아가 사태의 심각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진천교육청에서 2005년 5월에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를 해를 넘겨 집행하였다고 2006년 2월에 이 교장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공문에는 처분의 근거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이며 부당한 처분이라는 반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이기용 교육감과 서명범 부교육감도 찾아가 호소했으나 이 또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올 8월 초 도교육위원회에 청원하게 된 것은 결국 모든 사건의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 행정권자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청원인 이 교장에게 영양사 잔반 강제 급식 사건이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과 면직이라는 인사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그간 사태를 키워온 진천 교육장이나 교육감, 부교육감에 대한 무 조치에 비해 터무니없는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계양정상 공무원의 중대한 직무유기는 파면에 해당합니다.

본 청원 사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여 소위원회 구성을 거절한 도교육위원회 또한 무성의함과 비정함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위원 일곱 명은 한 명에 비해 열 배 이상의 능력을 올릴 수 있고, 또 주말을 낀 나흘간의 말미는 하루 6시간에 비해 열 배 이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비록 청원 사항의 일부는 미봉책으로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과정이 너무도 억울하니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교육가족의 하소연을 위원 4인은 외면하였습니다. 이로서 2003년도 11월 7일 충청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청원을 비롯, 총 두 개의 청원 안건이 제4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학교급식 지도에 항의하는 학부모들 앞에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은 청주 한별초등학교 사건은 청주 교육청과 충북교총에 의해 고발당한 학부모가 최근 사과문을 쓰고서야 불기소 처

분되었습니다.

이미 학교 안에서 주변의 중용에 의해 사과문을 써서 제출하여 갈등이 일단락되었음에도 외부 기관인 지역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고발되고 또 다른 사과문을 다시 제출하고 나서야 고발이 취하된 것입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한 후에 풀어주는 교육당국의 처사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임기 4년 동안 가까이서 본 충청북도 교육 현장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나 교육행정 기관도 하나의 사회이기에 생각처럼 말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염원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발언하고 수용되는 교육풍토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을 길러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교육권을 교사에게 위임합니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우리 자녀를 존중하고 제대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강자의 눈치를 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넘겨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사람을 제대로 길러 사회에 내보내는 희망의 요람이기에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누구라도 용기있게 이의제기 하여 시정해야 합니다.

남의 문제라고 수수방관하면 언젠가 나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여 단결합시다!

학부모들이여 바로 섭시다!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8월 28일.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송대현 교육위원입니다.

제4대 교육위원을 마감하는 제193회 임시회에서 이기용 교육감님을 위시한 집행청 관계관님과 4년 동안 함께 했던 동료위원 앞에서 교육감님에게 바라는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서는 충북교육을 좋은학교를 만들어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우리 교육청 현관에 “관심·사랑·화합”이라는 현판을 크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좋은학교란 교육여건이 좋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학교장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며 폭력 없고 왕따 없는 학교가 좋은학교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학교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맞춤형 깨우침을 주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평생 진로를 안내하며 수시로 학교운명을 공개하여 교육가족 사이에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학부모, 지역사회의 평판이 좋은 학교가 진정한 좋은학교이며, 이것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관심·사랑·화합”의 정신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합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의식·교육재정·학생의 학교선택권·진로지도·교원평가제·소외계층·소규모학교·공교육내실화 문

제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열쇠는 교육가족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대안이나 해법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의 신뢰,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 학교와 교육청의 신뢰, 특히 아이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교육의 첫 출발이며 교육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교육현장에서 신뢰에 금이 가는 크고 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문백초등학교 청원의 문제도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입니다.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우리 학부모에게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도록 합시다.

우리 학부모에게 선생님을 이해하고 학교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우리 학부모에게 선생님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도록 합시다.

교육이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신회회복운동 전권대사로 취임하시어 교육신회회복운동의 선봉장이 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선학교를 방문하실 때마다 교장과 지역 유지보다 먼저 어머니들을 만나 보시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좋은학교 만들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호소해 보시지요.

충북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안을 수립함에 있어 아이들의 예절교육과 학부모교육에 특단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는 신회회복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영예롭게 당선된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들께는 축하와 낙선의 고배를 마신 많은 후보자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특히 동료 교육위원 가운데 낙선한 위원님께서서는 영예와 고배는 부처님의 법대로 보면 모두가 빈 것이라는 말로 거듭 위로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위시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년간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문백초등학교 청원에 대하여 의회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된 사항을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자신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르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발언의 취지를 의심케하는 것 또한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문백초등학교 청원의 내용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고규강

송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4대 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시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돌아해보면 충북교육이 좀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교육위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문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문제 등 현안 과제들을 남기고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는 제5대 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제도의 실현으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및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모두가 충북교육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흘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反)이라는 말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뜻이겠죠. 임기 중에 맺은 교육위원님들과의 인연,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관 및 교육가족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간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의정활동 및 교육위원회 운

[제193회-제2차 본회의]

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만 7천여 교육가족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8.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성 영 용 

위 원 송 대 헌 

의사국장 박 경 석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8. 24. ~ 8. 28.(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월 24일(목)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6. 8. 24. ~ 8. 28. (5일간)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학교급식 관련 청원의 건(소개교육위원 고규강) 8.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제안설명
8월 25일(금)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본회의 회 휴 회
8월 26일(토)		본회의 회 휴 회
8월 27일(일)		본회의 회 휴 회
8월 28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의안번호	제193-1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8월 11일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1
----------	-------

제출연월일 : 2006. 8. 1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항 “제24조제3항”을 “제29조제5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중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 다.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여 “보조금등”으로 표현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물품을 제외한 자금만을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내지 제10조·제14조 내지 제18조)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신청)”을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을 하며, 동조제2항제4호중 “보조금등의 금액 그 산출기초”를 “보조금액의 산술기초”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중 “차입금”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등의 교부조건)”을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의 제목“(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을“(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로 하고, 동조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조금등”을 각각 “보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보조금등의 반환)”을“(보조금의 반환)”으로 하고, 동조중 “보조금등”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제8조제2항·제10조·제14조제2항·제16조 내지 제18조중 “보조금등”을 각각 “보조금”으로 한다.

제19조중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시행령</u>」 제29조제5항-----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u>보조금등</u>”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u>보조사업</u>”이라 함은 <u>보조금등의 교부대상</u>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①----- -----“<u>보조금</u>”----- ----- ----- <u>자금</u>----- ②----- -----<u>보조금</u>-----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보조대상) <u>보조금등</u>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p>	<p>제3조(보조대상) <u>보조금</u>----- ----- ----- -----</p>
<p>제4조(<u>보조신청</u>) ①<u>보조금등의 교부신청서</u></p>	<p>제4조(<u>보조금의 교부신청서</u>)</p>

<p>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u>보조금</u>----- ----- -----</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교부받고자 하는 <u>보조금등의 금액 그 산출기초</u></p>	<p>4. -----<u>보조금액의 산출기초</u></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u>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법</u></p>	<p>&lt;삭제&gt;</p>
<p>7. (생략)</p>	<p>7. (현행과 같음)</p>
<p>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u>차입금에 관한 사항</u></p>	<p>8-----<u>수입금액</u>-----</p>
<p>9. (생략)</p>	<p>9. (현행과 같음)</p>
<p>제5조(<u>보조금등의 교부결정</u>)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u>보조금등을 교부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제5조(<u>보조금의 교부결정</u>) ----- ----- ----- --<u>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u>----- -----</p>
<p>1. ~ 4.(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u>보조금등의 교부조건</u>) ①교</p>	<p>제6조(<u>보조금의 교부조건</u>) ①---</p>

육감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의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방법) ① (생략)

②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에 보조금등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

②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

제8조(교부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 2.(생략)

3.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취소) ①-----보조금-----

보조금-----보조금-----

②-----보조금-----보조금-----

1. ~ 2.(현행과 같음)

③-----보조금-----



제16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

금등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1. ~ 4.(생략)

제18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등

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  
-----  
-----  
보조금-----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독) -----보조금

-----  
-----  
-----  
-----  
-----  
-----  
-----.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시행령법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193-2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8월 11일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2
----------	-------

제출연월일 : 2006. 8.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의 인용조항 “제16조의2”를 “제33조”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부위원장의 직무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다.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단서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6조의2</u>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지방재정법</u>」 제33조----- ----- ----- -----</p>
<p>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p> <p>① (생 략)</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부득이한 사유로</u> <u>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u>----- -----</p>
<p>제5조(회의)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lt;단서삭제&gt;</u></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제10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193-3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8 월 11일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3-3
----------	-------

제출연월일 : 2006. 8.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함(안 제2조)
- 나.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 연임가능 함(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6조)
- 바.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집행 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토록 함(안 제7조)
- 사.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아.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요청 등)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회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한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

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7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계약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별첨 5)

의안번호	제193-4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8월 11일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4
----------	-------

제출연월일 : 2006. 8.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2006. 1. 1 시행)를 갖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의 정의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안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안 제27조제1항)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4조제2항)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 및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
- 마. 물품의 망실·훼손시 보고체계의 재정립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로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0조)
- 바. 물품출납사무의 인계후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출납원 사고로 인한 인계사무를 대리하는 직원의 지정을 합리화 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33조)

##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나.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교육청”을 “본청”으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4호중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각각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중 “청·소”를 각각 “관서”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없는 것”을 “없는 물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내구년수”를 “내용연수”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10백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교육청”을 “본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없는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운영관,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교육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을 각각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제1청·소”를 “교육청 및 제1관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중 “조제”를 “작성”으로 한다.

제26조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출납사무”를 “관리사무”로 한다.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교육감”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33조중 “교육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1청·소 및 제2청·소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당해 교육장과 청·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생략)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나.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다. (생략)

2.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당해 청소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생략)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

②-----

-----관서-----관서-----

-----관서-----

③(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관서-----

1. (현행과 같음)

가.-----관서-----

나.-----관서-----

다. (현행과 같음)

2. 관서-----

-----관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관서-----

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 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 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관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  
---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  
--- 관서---  
---

②(현행과 같음)

<삭제>



2. 도내(시·군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④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생략)

②(생략)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1.~4.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2. -----  
-----  
----- 1천만원 -----

④ -----  
-----  
----- 본청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  
-----  
-----

1. -----  
----- 없는 경우 -----
2. ----- 없을 경우 -----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  
-----

- 1.~4. (현행과 같음)

④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⑤~⑧(생략)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③(생략)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⑧(현행과 같음)

제20조(보관책임) ①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이, -----

② -----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 -----

③(현행과 같음)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영관 -----

----- 관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영관, 분임물품출납원 -----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  
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보고  
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  
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  
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  
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  
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  
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제1청·소에 있어  
서는 교육감에게, 제2청·소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1. (생략)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 4.~5. (생략)

<단서 삭제>

②-----  
-----  
-----물품관리관  
-----

③-----  
-----  
-----물품  
관리관-----  
-----

④물품관리관-----  
-----  
-----교육청 및 제1관서-----  
-----관서-----  
-----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삭제>

4.~5. (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  
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  
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  
을 찍어야 한다.

③~④(생략)

제25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  
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  
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  
품출납원의 장부 검사는 물품  
관리관이,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  
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25조(장부의 작성) -----

-----  
----- 작성 -----  
-----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  
존) ----- 물품출납원, 물  
품운용관 -----  
-----  
-----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사무의 검사는 물품관리관  
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  
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 및 제1 청·소에 있어서는 재무과장을, 교육청 및 제2청·소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①(생략)

②

관서

관리사무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관서

②(현행과 같음)

<삭제>

제32조(인계의 절차) ①(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물품관리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 (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 (물품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이용관"이라 한다.

**제57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62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표준서식)**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

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90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물품수급관리계획)**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1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6조 (표준서식등)** ①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청구서
4. 물품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②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3조(사용)** ①물품운용관은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0조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현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별첨 6)

# 청 원 요 지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청원요지서

청원자의 주소 : 문백초등학교

성 명 : 교장 이 월 희

## 청원의 취지

- 학교장에게는 지도감독권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지도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들면서 반말은 예사였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보건교사 이상은, 조리사 이순희, 교사 이순희 영양사 이명순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때마다 진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을 비호하고 두둔하여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갖가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영전을 시켜주고 청원인은 벌을 하였습니다.
- 진천교육청의 불법부당한 행정의 일련의 사태와 급식소 문제등이 너무 어렵고 감당할 수가 없어 진천교육장, 교육감, 부교육감을 면담하여 해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급식 거부사건입니다.
- 문백초등학교 급식사태가 발생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06년 5월 17일부터 문백초등학교를 특별감사하여 피해자 임에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행정처분에도 가해자들에게는 피해자와 동등한 처분을 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을 주도한 진천교육청 관리담당 이상래에게는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가장 악랄하게 무고한 투서와 행패를 부린 조리사에게는 가벼운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의 짜맞춰진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대하여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교사, 조리사가 반말을 예삿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들고 소란을 피우고 허위투서를 받고 진천교육청 보건급식담당 강송미(6급)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교장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다며 일축하였고 이 대화내용을 즉시 보건교사에게 전달하여 또 대들게 하였습니다.
- 문백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진천교육청을 2번 찾아가 진실을 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청원인의 남편이 2006. 3. 17, 2006. 3. 20 진천교육청의 불법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진천교육장에게 항의하면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문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부회장, 동문회장 등이 3차례 진천교육청을 찾아가 급식소 문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방치하였으며,
- 2005학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희망을 문백초등학교가 신청하려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 2006. 2. 28 진천교육장에게 묵살당하고 교육감을 면담하고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진실을 규명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 2006. 3. 6부교육감님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2006. 3. 8 청주시 용암동 모처에서 부교육감을 만나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하며 문백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진천교육청의 불법부당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진실을 규명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몇 일후 조치 된 것 하나 없이 진천교육장의 지시를 따르라는 부교육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그 후 문백초등학교 동문께서 교육감을 면담하고 문백초등학교 교장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해결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 후 2006. 4. 13부교육감이 문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동문회, 청원인, 교사등과 면담하고 진천교육청이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방치하면서 2006. 5.초 급식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 진천교육청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같이 행정을 한다면 일선학교 그 누구도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문백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과 진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의 불법부당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진실을 규명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거 조치해 줄 것을 요구

소개위원의 성명    고    규    강  
 접수년월일        2006. 8. 11.

# 청원요지서

청원자의 주소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2

성 명 : 오 상 례(문백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청원의 취지

- 문백초등학교는 시대의 변화속에 소외되고 낙후된 곳으로 여러 면에서 뒤떨어져 학부모도 안타까웠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청주 등의 학교로 전학시키는 등
- 최근 2-3년 전부터 문백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곳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학교로 전락
- 허동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수기 설치를 요구해 이를 설치하고 이상은 보건선생님에게 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장선생님과 마찰로 2004.8월에 제거
- 그 후 학부모회와 동문회에서 초빙된 이월희 교장선생님이 처음 와서 학부모회로부터 정수기 설치요구를 받고 이상은 보건선생님에게 지시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고 6월 이상을 설치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학부모들과도 다투는 등으로
- 학부모들이 진천교육청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를 발생. 이 문제로 이상은 보건선생님과 친했던 이순희 조리사, 이명순 영양사마저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교장선생님에게 대들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마찰이 계속되자
-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찾아가 진상을 규명하여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운영위원장, 동문회장, 어머니회장 등이 진천교육청을 수

차 찾아가 해결을 요구했으나 해결은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알려줘 다시 교장선생님에게 대들게 하는 등 진천교육청에 이들을 조종한 배후가 있었습니다.

- 3월말쯤 충청북도 부교육감이 문백초등학교에 오셔서 학부모들과 면담을 하고 진천교육청이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해결해 주겠다”하고 한달이 되도록 방치
- 문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진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진천교육청이나 충청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충청북도교육청 어디에 호소해도 해결이 되지 않음
-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처음 꿀꿀이죽을 먹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믿기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해 놓은 것을 보고 앞이 캄캄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급식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동안 문백초등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열심이셨던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음.
- 문백초등학교에 문제가 오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방치한 진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감사결과를 떳떳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
- 문백초등학교의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감, 부교육감, 진천교육장이 진천출신이자 동문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이며,
-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엄중문책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

소개위원의 성명    고    규    강

접수년월일         2006. 8. 11.

# 청 원 요 지 서

청원자의 주소 : 문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성 명 : 곽 창 근

## 청원의 취지

- 문백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2004.06.10 임시회를 열고 초빙 교장제를 실시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학교장으로 임용
-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월회 교장은 잔여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어 초빙 임기 중 전보할 수 없으며
- 2006.07.27 운영위원회를 방문한 장학관처럼 억지로 끌고 가려함은 도교육청의 주관적 해석으로 보아야하며
- 초빙교장 면직 요청 절차에서 1차 부교육감의 방문, 2차 인사담당 장학관이 방문하여 면직 요청만 강행하려함은 절차상 문제가 많으며
- 운영위원장 곽창근과 동문회장 유재구가 교육감을 방문하여 면담 중 문백초등학교장을 감사한 결과 잘못된바가 없어 진청교육청에 감사를 다시 했다는 내용과 부교육감이 문백초등학교장과 그 부군을 감사한 결과 잘못된 내용을 찾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의 부서장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었다는 내용으로 그 징계의 내용이 경미해야하고 또한 위 두 사람의 발언서두에 정상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표적 감사였으며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징계를 하고 전보하고자 한다면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할 수 없다.

- 문백초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회, 총동문회 지역주민 모두가 이월회 학교장이 남은 임기기간은 물론 그 후에도 우리 곁에서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가르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잊은 것으로 교육행정 서비스 중 수요자를 무시한 처사로 부당.

소 개 위 원 고 규 강

접수년월일 2006. 8. 9

(별첨 7)

제193회 임시회

##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8. 2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8월 25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인용조항 “제24조제3항”을 “제29조제5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중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여 “보조금등”으로 표현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물품을 제외한 자금만을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내지 제10조·제14조 내지 제18조)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가. 제6조제2항 구체적인 반환 조건은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삽입사유는

○ 상위법령에 명기되어 있고 선언적 의미임. 운영시 판단 적용

다.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내용은 무엇이고, 담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여부와,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에 담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법은 중앙관서에 적용되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됨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인 “제24조 제3항”이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안 제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또한 표현된 조문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금전과 물품” 을 “자금”으로,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8월 25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인용조항 “제16조의2” 를 “제33조” 로 변경함(안 제1조)
- 부위원장의 직무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사고가 있을 때” 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단서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 가. 안 제3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바꾸어도 무방한지 여부  
○ 법률 용어상 쉬운 용어 사용(법제처 확인 사항임)
- 나. 사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 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짝수 구성인지, 홀수 구성인지 여부  
○ 구성 인원은 15명임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인용조항인 “제16조의 2” 가 “제33조” 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령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 부위원장의 직무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제3항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8월 25)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함(안 제2조)
-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 연임가능 함(안 제3조)
-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심의를

-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6조)
-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집행 시 충청북도 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토록 함(안 제7조)
  -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 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 가. 계약심의 위원으로 교육위원 1~2명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촉할 수 있다고 봄
- 나. 교육위원1~2명 정도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다. 5인이내의 소위원회 결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봄
- 라. 소위원회의 필요성 여부
-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임
- 마. 각급기관장의 범위란
-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말함
- 바. 계약심의위원에서 심의 대상은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은 10억 이상)와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은 5억원 이상)임
- 사.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9인은 교육청에서 정한 것인지 여부
- 교육청에서 정한 것임
- 아. 소위원회 인원 5인 이내로 하였는데 결정의 대표성 여부
- 대표성이 부족함으로 5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자. 안 제4조 중 다만 이후 사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지 여부

-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님
- 차. 안 제10조 심의 결과에 어떤 범위 규정이 빠진 여부
  - 상위법과조례가 일치하는게 맞다고 보며 문장으로 보았을 때 입찰 및 계약 체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삽입하여야 함
- 카. 계약심의위원회의 어떤 활동 목적이 빠져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에 적정성과 적법성이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 중 주요 심의 사항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에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는 것임.
- 안 제7조에 본청 및 각급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 체결 시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에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기능) 제1항 중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를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로 수정하고,

- 안 제6조(소위원회)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며,
- 안 제10조(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를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 5. 수정안 주요내용

###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 삽입 및 변경

###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4조(기능) 제1항 중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를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로 수정
- 안 제6조(소위원회)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
- 안 제10조(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를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8월 24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8월 25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제(2006. 1. 1 시행)를 갖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행정기구의 정의중 행정기구의 정의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안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제4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안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4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 및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
- 물품의 망실·훼손시 보고체계의 재정립과 중복된 조항의 삭제로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0조)
- 물품출납사무의 인계후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출납원 사고로 인한 인계사무를 대리하는 직원의 지정을 합리화 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33조)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 가. 안 제16조 제2항에서 “내구년수” 가 “내용연수” 로 되어 있는데 표기여부
  - 상위법에 “내용연수” 로 표기되며,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연수” 로 통일
- 나. 물품관리관 등 업무 분야에 대하여 설명
  - 지역교육청에 물품 관리관은 관리과장임
- 다. 운용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잘 이해하여 운영 차질이 없도록 당부

라. 용어에 혼돈이 올 수 있어 명확하게 정리 요망

마. 안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여부

-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음

바. 안 제16조제1항 “없는 것” 이 “없는 물품”으로 한 사유는

- 내용의 명확성 기하고 조례 문구 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에서 규정 되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제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정의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후생 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하며, 영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물품의 망실·훼손시 보고 체계를 재정립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 8. 28.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 삽입 및 변경

###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4조(기능)제1항 중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를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로 수정함.
- 안 제6조(소위원회)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함.
- 안 제10조(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를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지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 3. 수정안 : 따로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기능)제1항 중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를 “위원회는 영 제 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로 수정함.
- 안 제6조(소위원회)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함.
- 안 제10조(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를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b>제4조(기능)</b>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li> <li>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b>제4조(기능)</b> ①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u>다음 각 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u>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계약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li> <li>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4. 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li> <li>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의결과 반영)**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8. 28.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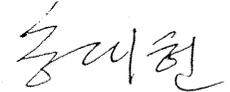
김남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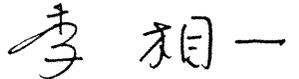
간사

이기수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상일 

진옥경 



第19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425

##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461
2. 서면답변서 ..... 463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8월 25일 (목요일) 10시 00분

## 議事日程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준

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견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영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 ● 성영용 위원

김남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위원장 김남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간사선출의견

(10시 03분)

### ● 위원장 김남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송대현 위원

이기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 ● 위원장 김남훈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간사 이기수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 조례가 좀더 나은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

하고 또 노력할 예정입니다.

(10시 05분)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남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인용조항이 제24조 제3항에서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어의 정의 중 조례에 명시된 금전과 물품을 금전을 통틀어 일컫는 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여 보조금 등으로 표현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물품을 제한 자금만을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제6조의 제목 제2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2항에 보면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반환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 6조의 제2항의 내용 중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추계함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 당초 교부목적인 교부사업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1항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항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될 때에 그 보조사업장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는 상위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조례에 그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조례상에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나타난 대로 상당한 수익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던가 이럴 경우 조건을 붙여 가지고 반환하게 하는 그런 예시로 해서 저희들이 선언적 의미로 해서 규정을 추계를 한 겁니다.

● 이상일 위원

결국은 선언적인 의미지 그 동안 보조금이 있어야지 유지가 됐던 기관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건 몰라도 수익이 났다고 해서 기왕에 줬던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회계연도에 따라서 벌써 다 그게 결산보고 써 치운 돈인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지 사실상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선언적인 그런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너무 기대지 말고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자립이 되면 보조금을 끊을 수 있는 거고, 또 소득이 많이 나면 보조했던 돈의 일부도 환수할 수 있다 하는 선언적인 의미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6조 2항에 관한 부분인데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더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꼭 넣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범위라는 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그런 내용을 추계한 겁니다.

구체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렇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 현재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교부사업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답변이 되겠습니까?

● **성영용 위원**

글쎄, 앞에 원안관계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이 충분한데 이걸 꼭 상위법에 있어서 넣어야 하는가도 문제점이 있고, 이런 예시도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교부할 때 교부하는 목적을 정해 가지고 교부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한시라도 위배되어 가지고 그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그 목적에 반하는 요청을 한다든가 받기 위해서 그 문구를 상위법령에 넣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상위법령에 맞춘 겁니다.

● **성용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저는 좀 지금 다른 조례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총괄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과 우리 지방조례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또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것에서 상위법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조례는 그 어떤 세부사항이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지방에서의

운영 면을 다루는 거라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고 또 담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제가 다른 조례심의에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은 그대로 상위법으로 있고 조례는 우리 독자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세부사항을 하는 거라면 구태여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상위법에 꼭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건 대부분 중앙관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항을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에 정해 놓고 지방에 적용되는 조항들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령이라 하더라도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따로 조례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다 같이 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상위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는 법령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담고 있거든요.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내용이 다시 조례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상위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이라든가 중앙관서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그럼 왜 좀 전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구태여 삽입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뭐랄까 대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조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구태여 조례에서 다시 상위법의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거기에는 중앙법률에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 준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거기에 지방조례에 별도로 이렇게 특수하게 검토해 가지고 제외된다든가 보완될 문제가 없다면 그런 문제를 조례에 담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를 들어서 목적에 위배되는 범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범위가 있을 때 상위법령에서 중앙관서에 적용하는 어떤 법의 그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지방조례는 영향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 안에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상위법의 조항이 지방조례에 영향을 주느냐 안주느냐 말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법률 자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바로 적용받을 수가 없죠.

● 진옥경 위원

없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겁니다.

법률에 중앙관서의 장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

했다면 우리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데, 여기에서 법률에 정한 거는 중앙관서의 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 조례에 따라 정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사례들이 그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의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에 관한 인용조항이 제16조의 2에서 제33조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위

원장의 직무 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5조 제3항의 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3조 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까, 없는 때입니까?

앞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러면 없을 때가 맞지 않습니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

른 부분들은 구태여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안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뭐가 있을 때와 뭐뭐가 없을 때 이렇게 되지 않나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법제처에 그 법률제정 심사기준에 보편은 없는 때 용어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확인을 하셨던 말씀이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사고가 있을 때는 맞는 말이고 수행할 수 없을 때하고 없는 때하고는 어떻게 다른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이 내용은 사고라 하면 저희들이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명시한 것은 법령 체제상 쉬운 용어 사용으로 해 가지고, 사고라면 내용이 의미가 복잡한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의미도 포함되고 그래서 쉬운 용어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바꾼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거는 관참고 없는 때가 맞다는 말씀

이 확실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거는 법제처 실무자 의견에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앞으로는 법률용어에는 없는 때로 하는 걸로, 사고가 있을 때를 유고 시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이게 법제처의 법률용어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랄까 그쪽 편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와 없는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는 저기 하셔 갖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후에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쭙 본 겁니다.

하여튼 그게 옳다니까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이면 모든 계약을 얼마이상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건 다음 안건입니다.

● 간사 이기수

다음 안건, 그런데 여기 지금 9인으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성영용 위원

다음 안건이에요.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남훈

네,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그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충북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명단이 있으면 1부 주시고, 지금 저기 과장님 위원장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현재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구성되어 있죠.

그러시면 사후에 저한테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이 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반 심의규정에 따라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짝수로 구성이 됐는지 홀수로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명단을 하나 주시고,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15명으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문안을 5조를 보면 위에 본문에 보면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과반수라는 거는 가부동수보다 찬성이 더 높아야지 되는 건데 사실 단서조항이 현재까지는 잘못 규정이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저한테 명단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28분)

● 위원장 김남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

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 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합니다.

주요 심의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이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며, 본청 및 각급 기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체결 시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청이 모든 건축공사나 또는 다른 공사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심의위원회 하면 대개 모든 위원회 쪽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갖고서 거기서 심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일 텐데 이 9명의

추천자 중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도 한 분이 들어감직도 한데 그건 어떻게 상위법에서 그건 못 들어가게끔 규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상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향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 간사 이기수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1, 2, 3, 4, 5향으로, 6향까지

● 간사 이기수

그러면 여기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 한 사람입니까? 나머지는 이 분들 위촉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교수 선정도 집행청에서 적당한 분을 선정해 갖고 교육감 결재로다가 위촉하고 이렇게될 텐데 이게 대부분 됩니까 다 교육감이 위촉하는 분 아홉으로 다 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각 호에서 정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관련협회라든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맞는 그런 계약 심의위원으로서 활동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위촉을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가 번의 위원 속에는 상위법에 위배만 안된다면 교육위원이 한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호에서 6호까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님 중에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래서 대개 집행청에서 구성하는 위원회를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거의 집행청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보다는 거의 얘기하면 그대로 전부 해 주는 와서 그래도 올바른 얘기를 어떤 안될 부분은 말입니다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갖고서 그 부분이 좀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

한 위원, 대부분 교육감이 위촉하면서 가까운 분들이 대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서 이거 견제기관인 교육위원회 쪽에 한 분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조례로써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할 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들어가실 부분이 있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간사 이기수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사실 위원회 마에 보면 이게 위원회가 위원수가 한 15명이라든지 한 20명 이상 됐을 경우에 소위원회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게 5인 이내의 소위원회다 그러면 5인 이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9명이 위원회인데 3명도 소위원회 5인 이내면 3명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거 그러면 9명이 결정할 걸 한 셋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시 볼 수 있다고 하든지 하면 이거 상당히 악용될 수 있는 규정 같아요.

5인 이내면 4명도 5인 이내 아닙니까? 3명도 5인 이내고 말이요, 5인 이내면 1

명도 5인 이내가 돼요 1명도, 이것도 뭔가 소위원회 구성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만약 그렇다든지 하면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 이렇게 해 줘야지 되지 5인 이내면 2명도 5인 이내 아닙니까? 의미상으로 그건 어떻게 봅니까?

###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인 이내로 한다면 1인부터 5인까지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가장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해당 계약 건에 대해서 가장 잘 내용을 알 수 있는 분을 전체를 모여서 하기 힘들 그런 경우에, 가장 심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축소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도 그런 소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포함을 일단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간사 이기수

이걸 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이게 한다면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몇 번 어떤 건 둘 수 있다는 얘기는 자의적인 판단할 수 있는 소지

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내용은 2항에 보시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감사 이기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5인 이내 소위원회이라고 하든지 하면 둘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원회 하한선을 정해 줘야될 겁니다, 그건.

계약이라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 갖고서 계약을 합리적으로 어떤 교육예산의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5인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명, 3명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5명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하다 보면 5인이 다 참석을 못하고 3인이 참석한다든가 4인이 참석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5인 이내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예 5인 이내를 갖다가 5인 이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한선을 5인으로 두는 쪽으로 그렇게.....

● 감사 이기수

그렇게 해야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내를 이상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알겠습니다.

● 감사 이기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원회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9명중 포함이 되는지 9명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드릴게요.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이기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용역·물품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성인원이 9명인데 최대 5명으로 해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걸 하게 되면 다 더블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냐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여섯 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으로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은 어떻게 할 겁니

까? 이게 전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전문가로서 한다 그랬는데 분야가 교수도 있고 다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소위원회를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세 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이 소위원회의 현재 이 업무를 봐서는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네 번째, 이 계약심의 요청에서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교육감은 이해를 하겠는데 각급 기관의 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또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한다 심의나 자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또 다섯 번째는 11조에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으로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했는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이거를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으로 정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여기는 해외여행이나 병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너무 딱 박아놓은 거거든 개인의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또는 부

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정정하는 방법이 어떠신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꺼번에 분야별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사전에 두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떤 계약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이 조례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전체 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의 요청사항 중에 각급 기관의 장은 본청뿐이 아니라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이걸 예시를 사실 들은 거고 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촉사유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소위원회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그 구성요건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9명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등 여러 가지 어떤 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명이 그냥 말으면 될 걸 꼭 이걸 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한다는 건 그것도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다른 데 외부에 이 심의위원 외의 다른 인사를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한다면 몰라도, 그 구성 내에서 이거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근데 그것이 소위원회는 그러니까 9명이 전체 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그 중에서는 위원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의 위원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도 그렇게 정한 결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괜히 업무분장만 시켜놓은 거지 일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없다고 봅니다. 괜히 갈라놓기만 했지 그래서 한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하여튼 요 부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충분히 운영해 보고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후라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서 정비할 계기가 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면 간사관계 아까 얘기했던 간사는 의결권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없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부분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사의 의결권관계는 안나와 있거든요, 9명이라고 그랬는데 간사까지 포함하면 10명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간사는 원래 위원 자체에 포함 안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명시는 안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원래는 그렇다고는 그러지만 일단 이런 조례는 명시를 해 놓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개인사정으로, 제가 요거는 이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까 애

기했는데 등자를 해서 그냥 물어 넘어가  
자 하는 말씀인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장기간 하여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니까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  
는 과정에서 그건 좀 충분히 검토해서 운  
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됐습니까?

답변되었어요?

● 성영용 위원

답변은 안됩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진옥경 위원

각급 학교에서 냉방기를 설치하거나 컴  
퓨터를 설치할 때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내용은 공사의 경우는 50억 이상,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10억 이상으  
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아닙니  
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교육청별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합니까? 그런 물

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제 구입 주체별로 계상하는 거기 때  
문에 학교장이 한다면 학교장이 하는데  
10억 이상된 물품을 사게되는 경우가 있  
다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모  
아서 하는 건 아니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단위에서 구매하는  
부분이라든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계약권자별로 뭐 교육감이 공사하는데  
50억 이상 공사한다 하면 포함이 되겠고,  
물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냉방기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어느 회사에 편중되어 있고 종전엔 어떤  
것들이 있던 것이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내용  
인가요, 아닌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저희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저도 그 문안을 받습니다마는 그  
럼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편중된 그러면  
여기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조달청에 만약에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할 경우는 조달청 계약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심의가 필요 없고.....

●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LG를 계속 작년 까지 편중되게 하다가 갑자기 또 삼성으로 편중되게 한다 그러면 조달청 계약에 관련한 법률은 여기에서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들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심의위원회의 논의사항 바깥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나 이런 부패의 소지 이런 것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없다면 이런 것들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요 법은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

령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거기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2005년 8월 4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그때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1월 1일부터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진옥경 위원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학교의 물품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처음에 조달청으로 전부 나와 가지고 저는 그냥 조달청에서 알아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일선 학교에 가면 그 학교별로 자기가 선정할 수도 있고 지역교육청별로도 할 수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이 조례로써는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해 갖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그 대로 지금 여기에 조례에 들어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중첩돼도 되는 것인지, 구성인원이나 이런 인원숫자들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위원들의 어떤 자격 제한, 자격에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시행령 106조와 중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구태여 여기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태여 다시 운영조례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요 사항은 32조 3항이라든가 시행령

109조에 보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첩됐다, 대부분의 내용이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위원구성에 있어서 명수제한이 아까 소위원회를 하면서 전체 인원이 9인 이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이 9인은 교육청에서 정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9인으로 정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법령에는 인원수는 제한이 없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인원수는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분야별로 심의하게 한다면 이 9인은 적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따로따로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중첩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우들처럼 위원들로 상당히 큰 부담을 저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본청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도 할 수 있습니까,

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는 본청에만 구성을 하고 실제 여기에 적용되는 대상 공사라든가 물품구입 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사항이라도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에 3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인력풀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하고 별도로 이렇게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은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만 이렇게 기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

니다.

● 진옥경 위원

지역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진옥경 위원

지역교육청에서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이제 교육청이 별도의 어떤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거 소위원회를 하시려면 9인은 너무 적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까 5인 이상이라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셔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별 소위원회가 상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인원이 상당히 적다고 저희들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고 계약 심의를 하는 안건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 너무 위원이 많아도 사실은 위원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인이 대부분이 다른 위원회도

물론 15인인 위원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9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거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9인정도면 위원회 운영하는데는 가장 적절하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9인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위법에서 107조에서 보면 시행령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뭐할 수 있다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인원도 적은 경우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9명으로 제한해 놓고 각 소위원회를 3개씩이나 구성하고 또 여기에서 5명 이상으로 참석요건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3개로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심의안건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위원 중에서 그 안건에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5인 정도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를 처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혹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제4조에 1항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4호 내지 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이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4호와 6호에 대한 단서조항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진옥경 위원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실무자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남훈

그러면 허락을 득하고서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양승근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 양승근입니다.

지금 4호에서부터 6호에 관련된 사항은 4호는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수의계약난에 거긴 별도로 학술용역계약을 특정인과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5, 6호는 영 10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제4호가 부정당업자관계고 제5호가 교육감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4호 내지 제6호라는 건 제5호를 포함하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양승근

4호, 5호, 6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 되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입니다. 심의결과 반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항목이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반영하는 것은 어디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반영한다가 빠져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심의결과대로 교육감이든가 각급 기관의 장이 심의결과에 반해서 이렇게 계약한다든가 할 수 없고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줄이겠습니다. 거기 32조 2항에 보면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 그냥 반영하여야 된다는 말은 이것이 목적이 빠진 것이 됩니다. 그냥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정확한 어떤 범위규정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32조 2항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양승근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양승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조례에 계약체결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반영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넣음으로 해서 상위법과 조례가 일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문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심의결과를 어디에 반영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안 자체로도 부정확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양승근

예, 맞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성·운영에 관련한 조례안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여기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는데 법률 32조의 1항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지금 그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도로만 해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어떤 활동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반복해서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 진옥경 위원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에 의거해서 어떤 대 원칙에 입각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지금 이 조례안을 받을 때 심의할 새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

령과 그 다음에 법률을 따로 받았어요,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조해 봤을 때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설립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소위원회 위원들도 이 조례만으로도 자기활동의 어떤 목적을 인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위원회를 자꾸 문어발 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 결정이 부당했다 또 어떤 편파적인 결정이 났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 소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지를 바로 이 적법성과 정당성 그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의거한 것이 적정성과 적법성 이 두 가지를 거기 입각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조례로서의 목적이 너무나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에 대해서 첨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남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기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기능의 제1항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 기능 제1항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영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소위원회 제3항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중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를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 위원장 김남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독자적 법령체계로 제정 시행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정의 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며,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영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직제를 도입하여 물품관리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보고체계를 재정립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간사 이기수

대부분 조례내용이 용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중에서 16조의 5항에 말입니다.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을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그러니까 사실 불용처리할 때 내용인 모양 같은데 상위법에서 내구연수가 내용연수로 아마 되어 있는 모양 같은데, 지금 우리 대개 법률이 일제하에 쓰던 용어들을 많이 쓰고 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법률도 쉽게 풀어 쓰려고 하는데, 지금 내구연수하든지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견 더 쓸 수 없는 이 물건은 수명이 다된 물품이니까 불용처리해도 괜찮겠다 해 갖고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내용연수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게 거의 아마 사전에도 내용연수라는 얘기는 없을 걸로 보고, 또 누구든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이야 상당히 모호한 표현 같아 보이고 말입니다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걸로 굳이 바꿔 써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구연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전부 내용연수로 조항이 아예 명시가 되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법제처로부터 내구연수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레가지고 내용연수로 전부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상위법에서 맞추기 위해 갖고서 안바꾸면 안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전에는 내구연수로 상위법에 쪽 되어 있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아마 현실적으로 용어 정비하면서 적절치 않다 해서 내용연수로 바꾸어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럼 이게 상당히 모든 법률이라는 얘기는 참 법률의 저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문제를 여러 사람이 알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될 텐데, 이게 내용연수라고 하던지 하면 이거 여기가 갖다놓지 않고서 다른데 내용연수를 떼어다가 내용연수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내구연수 한다든지 하면 물품수명이 얼마까지 되어 있느냐 그거 표시된 애기니까 쉽게 얘기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원활한 얘기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만이 참 효율성 있는 애기지 그 의미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다든지 하면 법률적인 조례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면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반 행정문서라든가 이런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내구연수라는 말을 쪽 사용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물품관리규칙이 상위법령에서 내용연수로 바꾸다 보니까 모든 행정용어도 내구연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연수로 통일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혼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고 사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지금 일반 행정,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은 내용연수 하면 다들 잘 알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뿐이 아니고 일반 행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내용연수로 전부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내용연수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영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업무분야를 지역교육청이면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 예시를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지금 현재는 물품출납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물품출납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과장으로 되어 있고 관리관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각 과에 분임물품경

리관이 있었는데 그걸 운용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현재 물품출납원을 갖다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으로 지금 개정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든지 취득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지역교육청은 교육장님이 관이고 그리고 관리과장이 출납원이고

● 성영용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관리관이 교육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분임물품관리관이 과장이 되고 경리계장이 출납원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운용관은 또 어떻게 돼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운용관은 교육과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성영용 위원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관리국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국장이 물품관리관이 되고 기타 교육청은 교육장이 물품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운용관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이 되겠고 재무과장이 없는데는 관리과장이 물품운용관리관이 되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물품담당이 물품출납원이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면 10조에 기증품의 취득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서 그 중간에 서식에 의거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데 조금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남훈

성영용 위원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줌.....

● 성영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양승근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 양승근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이 지금 관서의 장하고 지금 물품관리관이나 출납원이나 운용관은 회계직입니다. 그래 관직으로 지명을 하기 때문에 관직이 중복이 될 경우에 지금 교육장이 물품관리관, 중복됐을 때는 지금 같은 말씀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물품관리관은 회계직으로서 별도의 직위이고 교육장은 교육장으로서 별도의 직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이 조금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에 따른 관서장하고 회계직에 따른 회계직명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영용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알고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각 관서 또는 교육청에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반영을 충분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건 191회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물품관리관이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개념규정이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개념규정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61조 중요물품이 소멸이 되어 갖고 11조에서 생략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위를 좀 아시는 분 설명을 해 주시죠.

중요물품이 왜 생략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물품이 전에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서 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중요물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에 중요물품이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는 종전과 같이 별도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정수란 무슨 말입니까?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함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제가 용어를 알아야 포괄이 되는지 아닌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생략되는 이유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물품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물품은 그 기관의 어느 정도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해 가지고 사전에 숫자를 정해 줘 가지고 그 어떤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든가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걸 관리해나가는 거거든요.

● 진옥경 위원

아, 숫자는 정했다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미리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아예 추가를 한다든가 해야지 임의대로 물품숫자보다 더 취득한다든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 진옥경 위원

그 안에 중요물품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 1항에 우리가 영어에서도

뭐랄까 똑같은 단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는데요, 16조 1항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을 없는 물품으로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는 것이 차라리 중복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셨나요?

대조표 9페이지 중간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품으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없는 것 그렇게 하기보다는 물품을 해 가지고 용어 정비를 한 거거든요.

● 진옥경 위원

용어 정비가 오히려 더 서투러졌습니다. 앞에 것들이 물품으로서 하면 그것이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물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물품으로 고치는 것은 오히려 더 서투러진 용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태여 고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뭐 이것을 제가 다른 모든 문안들을 전부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고치셨을 때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오히려 뭐랄까 문법 구문상으로 더 불편하게 느

껴집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어차피 물품으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지금 규정에 대부분 법령에 보면 무슨 것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바꾸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법을 그러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대부분 법령에 무슨 것, 그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나오지만 다른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고 규정하다 보면은 것 하면 어느 걸 얘기할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명확하기 위한 뜻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으로 물론 앞에서 나와 가지고 내용은 충분하겠습니다마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비를 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두 번 강조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안고치셔도 될 것을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다른 조항을 손을 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도 같이 정비하게 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용어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고 이것은 없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하등의 어떤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 구문으로서 이것은 고치지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것 제가 이제까지 조례심의를 계속해 왔지만 좀더 면밀해 가지고 빠진 것이 거의 없는 정도로 굉장히 치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 자체의 완결성이라고 할까요 제가 늘 추구하는 거지만 내용에 충분히 담고 그 다음에 형식으로써도 완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조례심의와 예산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을 고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물품으로서가 전제가 된다면 이걸 고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동감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1호에서부터 각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전부 물품으로 이렇게 해서 물품이니 부족품이니 해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명확히 하고, 다른 각 호에 있는 사항하고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 오래 남는 거예요, 어쨌든 지역조례라도 그런데 우리들이 국어맞춤법도 아이들 받아쓰기 할 때도 띄어쓰기 하나 틀려도 전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례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 특히 예상하고 지적할 때 좀더 뭐랄까 매끄러운 그런 것들 목적어가 빠졌다던가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국어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하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아까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5대 위원님들께는 좀더 친절하게 관련조례와 모든 전문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법령을 대조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이기수,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6. 8. .

위원장 김 남 훈 *김남훈*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9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6. 8.25. (금) 10: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위원명	자 료 요 구 명
이 상 일	1. 충청북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 충청북도교육청세계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임기 : 2004.10.18.~2006.10.17.(2년)

위원회명 (구성시기)	설치 근거	순	직	성명	생년월일	직업	임용(위촉)기간	연락처			민간인	여성	기타	
								우편번호	주소	전화(자택)				휴대폰
충청북도교육청 세계평생교육 진흥위원회 (2004.10.18.)	충청북도지방 교육청세계평 생교육진흥회 심의위원회소 래	1	위원장	서명범	56.10.12	부교육감	2005.04.11~재직시까지	361-703	충주시 흥덕구 송남로 516번지	291-7713	011-469-1196			
		2	부위원장	신강탁	55. 2. 6	기획관리국장	2005.03.16~재직시까지	361-822	충주시 흥덕구 문평동 1249 현대-대우 APT 801-1945	291-7714	011-459-1871			
		3	위원	박의상	45. 3. 20	교육국장	2006.03.01~재직시까지	361-842	충주시 흥덕구 운천동 1213	265-8771	016-461-2435			
		4	"	김장한	49. 8. 20	기획관리과장	2006.01.01~재직시까지	360-220	충주시 상당구 사진동 403-9번지19동2반	212-9147	011-481-9147			
		5	"	이기수	42. 5. 12	교육위원	2004.10.19~2006.10.17	361-842	충주시 흥덕구 운천동 1639	265-4368	016-465-4368		○	
		6	"	장준호	41. 4. 1	충북도의원	"	370-802	충북 영동군을계산리 688-28	744-0999	011-403-0999		○	
		7	"	김제식	57. 8. 23	정대교수	"	361-181	충주시 상당구 중앙동 대원컨터빌 APT 102-902	293-3414	016-401-3414		○	
		8	"	오대균	58.12. 1	주성고학운	"	361-300	충주시 흥덕구 불명동 세원 APT 101-403	265-0510	016-466-8855		○	
		9	"	박영학	44. 4. 20	삼양초교장	"	373-805	충북 옥천군을정아리 모영빌라 303호	731-3180	011-1787-5052			
		10	"	이세행	45. 3. 8	충북공고교장	"	360-768	충주시 상당구 내덕2동 520-2 신화 APT 2-501	213-3056	019-413-3056			
		11	"	신유철	41. 4. 27	전교육장	"	361-150	충주시 흥덕구 수곡동 81-12	283-0700	016-9414-0700		○	
		12	"	홍훈표	40. 3. 19	전교육장	"	390-050	충북 제천시 명동 164	647-7153	010-9540-7153		○	
		13	"	오형균	45. 5. 25	진시설과장	"	363-862	충북 청원군 남성면 문박리 333	222-1677	016-460-7729		○	

2006년 8월현재